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2일, 지광천 의원 대표발의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4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11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지광천 의원)

가.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예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근거 법령(안 제3조)
-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6조)
-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안 제8조)
- 환수, 징계요구 등의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조례안은

예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근거 법령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안 제9조에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제정 요청”에 따라
관계법령을 근거의 자치법규안을 기준 한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 입법례는 전국적으로 100여개 지자체에서 실행하여 제정률 43%이며,
강원도는 7개 지자체(속초, 양양, 영월, 원주, 철원, 춘천, 횡성)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평창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평창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

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항, 제2항 규정은 부의장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